서 정 대 학 교

수신자	각 부서(처)장
(경유)	
제 목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개정 공람 공고의 건

1. 관련근거 : 서정대학교 규정집(SJ-R-3-4) 규정류 관리 규정 제10조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의 개정을 위해 붙임과 같이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공람 공고 1부.
2.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개정 사유 각 1부.
3.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4.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전문(제·개정 내용 반영) 1부. 끝.

학 생 복 지 처 장

기안자 이선희 학생상담인권센터장 최미영 학생복지처장 정하정

시행 학생상담인권센터 제22-01-16호(서) (2022.01.19.) 접수 ( )

우 11429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 www.seojeong.ac.kr

전화 031-860-5055 전송 031-860-5053 / jeje9133@seojeong.ac.kr / 공개

붙임 1.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공람 공고

서정대학교 학생상담인권센터는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하오니 열람하시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기간 내에 의견 제시가 없는 경우 개정된 규정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하고 2022년 03월 01일자로 시행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2. 공람기간 : 공람일로부터 10일간
3. 관련부서 : 각 학과 및 교수협의회
4. 의견제출 : 학생상담인권센터장 최 미 영

2022년 1월 19일

서정대학교 학생복지처장

붙임 2.

개 정 사 유

규정명 :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및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1. 부 서 명 : 학생상담인권센터

2. 규정 명칭 : 1)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2)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3. 개정 사유

1)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

▶ 조직 개편에 따른 센터 명칭 변경

▶ 조직 개편에 따른 센터 업무 조정과 위원회 신설

2)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

▶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명시

4. 주요 내용

1)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

▶ 제1조(목적) 센터 명칭 변경, 제2조(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제7조 및 제8조, 제9조, 제10조 인권위원회 설치에 따른 중재 및 위원회 회부사항,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를 명시함

2)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

▶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센터 명칭 변경, 제2조(업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조정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제3조(자격) 센터장 및 상담사 자격조건 변경,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명시, 제 4조(임무) 센터 명칭 변경,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의 세부사항을 명시함

붙임 3.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상담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명칭 수정
제1장 총칙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센터는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위기상담에 관한 사항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에 관한 사항 3. 상담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담 관련 업무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담 업무 및 프로그램 관련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상담 업무 및 프로그램 관련 환류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상담 관련 정보제공, 연구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 연구활동 9. 학생의 효율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각종 검사활동과 이에 관한 전문 상담	**제2조(업무)** 센터는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위기상담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각종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8. 삭제 9. 삭제 10.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업무 15. 성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 16. 학생상담인권센터의 효율적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업무 조정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10. 학생 진로 및 상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심리검사 실시, 결과해석,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 12.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진로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보관 등에 관한 사항 13. 상담지원 체계에 필요한 종합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사항	인 운영방안 수립	
제4장 인권위원회 제7조(중재 및 위원회 회부)		**제7조(중재 및 위원회 회부)**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중재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제4장 인권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제8조(설치 및 구성)** ①성문제를 제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제4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센터의 업무조정에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인권위원회 제9조(기능)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사항	따른 위원회 신설
제4장 인권위원회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센터의 보고에 따라 소집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센터의 업무조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3.

신 · 구조문 대비표

규정명: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정대학교 학생상담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명칭 수정
제1장 총칙 제2조(업무)	**제2조(업무)**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위기상담에 관한 사항 (가) 개인상담은 5회 기준이며,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서 상담자가 회기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나) 개인상담 예약 대기자는 연속 2회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자동 예약이 취소된다. (다) 개인상담 중 특별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2회 결석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라) 위기상담의 경우 관련 병원이나 기관으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에 관한 사항 (가) 심리검사 실시 후 해석상담을 할 수 있다. (나) 학과 별도 요청 시 심리검사 도구 중 MBTI 검사책자는 가능하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학내에서만 대여 가능	**제2조(업무)**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위기상담 (가) 개인상담은 5회 기준이며,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서 상담자가 회기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나) 개인상담 예약 대기자는 연속 2회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자동 예약이 취소된다. (다) 개인상담 중 특별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2회 결석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라) 위기상담의 경우 관련 병원이나 기관으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가) 심리검사 실시 후 해석상담을 할 수 있다. (나) 학과 별도 요청 시 심리검사 도구 중 MBTI 검사책자는 가능하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학내에서만 대여 가능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업무 조정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하다. (다) 검사 대상은 서정대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과 그 자녀로 제한한다. 3. 상담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상담 관련 업무 및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상담 업무 및 프로그램 관련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6. 상담 업무 및 프로그램 관련 환류와 개선에 관한 사항 7. 상담 관련 정보제공, 연구 및 자료조사 등에 관한 사항 8. 학생의 심리적 문제해결과 자기성장을 돕기 위한 전문적 연구 활동 9. 학생의 효율적인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각종 검사활동과 이에 관한 전문 상담 10. 학생 진로 및 상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11. 각종 심리검사 실시, 결과해석, 평가 및 환류 등에 관한 사항 12. 진로지도를 위한 각종 진로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보관 등에 관한 사항 13. 상담지원 체계에 필요한 종합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일체 업무	하다. (다) 검사 대상은 서정대학교 재학생(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과 그 자녀로 제한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11. 삭제 12. 각종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13. 삭제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업무 15. 성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 16. 학생상담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제2장 조직		제2장 조직	장 구분
제2장 조직 제3조(자격)	**제3조(자격)**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본교 학생생활상담센터 규정에 따른다. 2. 상담사의 자격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제3조(자격)**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본교 학생상담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 2. 상담사의 자격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최소 6개월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센터장 자격조건 변경. 상담사 상담 업무 경험 조정

조 문	현 행	개 정(안)	비고
	소지자로 한다.	상인자로서,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3. 센터는 구성원의 개인상담 및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4조(임무)	**제4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학생생활상담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상담사는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업무)에 따른다.	**제4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은 학생상담인권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상담사는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업무)에 따른다.	조직개편에 따른 센터 명칭 수정
제3장 위원회		제3장 위원회	장 구분
제3장 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제3장 위원회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성문제를 제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센터의 업무조정에 따른 위원회 신설
제4장 상담윤리		제4장 상담윤리	장 구분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제・개정된 규정의 전문(全文)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정 2014.03.01. 개정 2016.02.29.
개정 2020.03.01. 개정 2020.09.01.
개정 2022.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정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상담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1.>

제2조(업무) 센터는 학생생활 전반에 관한 연구와 전문적인 상담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며 건전한 대학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집단상담・위기상담 <개정 2022.03.01.>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개정 2022.03.01.>
3. 삭제 <개정 2022.03.01.>
4. 삭제 <개정 2022.03.01.>
5. 삭제 <개정 2022.03.01.>
6. 삭제 <개정 2022.03.01.>
7. 각종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22.03.01.>
8. 삭제 <개정 2022.03.01.>
9. 삭제 <개정 2022.03.01.>
10.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개정 2022.03.01.>
11. 삭제 <개정 2022.03.01.>
12. 삭제 <개정 2022.03.01.>
13. 삭제 <개정 2022.03.01.>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03.01.>
15. 성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 <신설 2022.03.01>
16. 학생상담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신설 2022.03.01>

제2장 조직

제3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상담사를 둔다.<개정 2020.09.01.>
②센터장은 본 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상담사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0.09.01.>

제4조(상담사) ①상담사는 전문상담, 심리검사, 연구활동 업무를 수행한다.
②상담사는 기타 상담원으로 업무 필요시 조교, 외부상담사, 자원상담사를 두어 상담 업무를 협조한다. [제목개정 2020.09.01.]

제3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관할부서처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한 학기에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4장 인권위원회 <신설 2022.03.01>

제7조(중재 및 위원회 회부) 신고접수를 받은 센터는 사건조사 및 심의를 위해 인권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는 중재할 수 있다.

제8조(설치 및 구성) ①성문제를 제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권침해 사건조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인권침해와 관련된 중요사항

제10조(회의) ①위원회는 센터의 보고에 따라 소집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5장 상담윤리

제11조(비밀유지)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기록과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유지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 한계) 위기 상황에서는 상담의 비밀유지에 한계를 시행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13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예산회계규정에 따른다.

제14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14.04.01. 개정 2016.02.29.
개정 2020.09.01. 개정 2022.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서정대학교 학생상담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01.>

제2조(업무) 센터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상담・집단상담・위기상담 <개정 2022.03.01.>
   (가) 개인상담은 5회 기준이며, 내담자의 증상에 따라서 상담자가 회기 수를 조절할 수 있다.
   (나) 개인상담 예약 대기자는 연속 2회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자동 예약이 취소된다.
   (다) 개인상담 중 특별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2회 결석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라) 위기상담의 경우 관련 병원이나 기관으로 연계하여 진행한다.
2. 각종 심리검사 실시 및 그 결과의 해석 <개정 2022.03.01.>
   (가) 심리검사 실시 후 해석 상담을 할 수 있다.
   (나) 학과 별도 요청 시 심리검사 도구 중 MBTI 검사책자는 가능하나 분실 및 파손 시에는 별도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학내에서만 대여 가능하다.
   (다) 검사 대상은 서정대학교 재학생(외국인 유학생, 휴학생 포함) 및 교직원과 그 자녀로 제한한다. <개정 2022.03.01.>
3. 삭제 <개정 2022.03.01.>
4. 삭제 <개정 2022.03.01.>
5. 삭제 <개정 2022.03.01.>
6. 삭제 <개정 2022.03.01.>
7. 삭제 <개정 2022.03.01.>
8. 삭제 <개정 2022.03.01.>
9. 삭제 <개정 2022.03.01.>
10. 학생들의 진로 및 상담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수립 <개정 2022.03.01.>
11. 삭제 <개정 2022.03.01.>
12. 각종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개정 2022.03.01.>
13. 삭제 <개정 2022.03.01.>>
14. 기타 학생상담 등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2.03.01.>
15. 성 문제를 포함한 인권침해 예방 및 처리 관련 사항 <신설 2022.03.01>
16. 학생상담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 <신설 2022.03.01.>

제2장 조직

제3조(자격) 구성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09.01., 개정 2022.03.01.>

1. 센터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 전임교원 중 관련 업무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 하며, 임기는 본교 학생상담인권센터 규정에 따른다.
2. 상담사의 자격은 상담과 관련하여 업무 경험이 최소 6개월 이상인자로서, 관련 분야 전문자

격증 소지자로 한다.
3. 센터는 구성원의 개인상담 및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관련 상담과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4조(임무)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9.01., 개정 2022.03.01>
1. 센터장은 학생상담인권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상담사는 학생상담인권센터 운영 규정 제2조(업무)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03.01.>
②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6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성문제를 제외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03.01.>
②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및 외부 전문가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위원과 간사 1명으로 구성하며, 전체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학생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22.03.01.>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03.01.>

제4장 상담윤리

제7조(비밀유지) ①상담사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내용은 일체 비밀을 유지를 해야 한다.
②상담사는 고용인, 지도 감독자, 사무보조원,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구성원들에게도 내담자의 사생활이 비밀이 보호되도록 상담윤지 주지 및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개정 2020.09.01.>
③내담자는 비밀유지를 기대할 권리가 있고 자신이 사례기록에 대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절한 권리, 거절에 따른 결과에 대해 조언을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 한계) ①상담에서 아래와 같은 각 호의 경우 비밀유지의 한계를 정한다.
1.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
2. 미성년 내담자가 근친상간, 강간, 아동학대 혹은 여타 범죄의 희생자라고 생각될 때
3. 내담자가 병리적으로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정보가 법적인 문제일 때

②자살, 자해 및 사안이 급박하다고 여겨지는 위기상담의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위하여 비밀유지 등의 어려움과 위기상담의 발생 시 내담자의 기본적인 정보는 상담사, 센터장, 관련 지도감독자, 관련학과 지도교수가 공유하며, 관련 기관에 즉각 협조요청 및 의뢰를 하도록 한다. <개

정 2020.09.01.>

제7조(예산 및 결산)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본교 예산회계규종에 따른다.

제8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